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재 무 과 -27085
등록일자	2015.10.20.
결 재 일 자	2015.10.20.
공개구분	부분공개(6)

주무관	재산관리팀장	재무과장	행정국장	
구모정	최성애	김병회	전결 10/20 이창훈	
협조자				

"구유재산의 적극적·효율적 관리를 위한"

구유 일반재산(세곡동 171-27) 매각 결과

□ 매각대상 현황

재 산 의 표 시					매각	드기시 O 게 칭	혀 화
소재지	구분	소유주	지목	(연)면적	면적	토지이용계획	현 황
세곡동 171-27	토지	강남구	대	42 m²	42 m²	도시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	주거용건축물 축조되어있음

□ 매각내용

- 매각방법 : **수의계약** 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1항
 - ※ 수의계약 사유: 매수신청자가 본인 토지 및 구유지 위에 주거용건축물을 축조하여 소유 중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가능
- 매각가격 : 169,426,400원 ☜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가격 (감정평가수수료 포함)

□ 매각추진

- 2015. 9. 9 : 2015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해당재산 매각 추진안 원안가결
- 2015. 9. 14 : 매각 계획 수립
- 2015. 9. 15 : 매매계약 체결 (매수청구인↔재무과)
- 2015.10. 19 : 매각대금 납부 (매수청구인)

매도증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교부

□ 기대효과

○ 매수청구자로부터 장기간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활용도 없는 일반재산 의 매각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

2015. 10.

강 남 구 (재 ^{무 과)}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및 동법 시행령 •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및 시행규칙					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세곡동171-3번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구유 일반재산 171-27에 대하여 매수신청 함에 따라 매각 검토 후 신청인에게 매각한 건임.					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·해당 없음					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아해당 없음					
분 야 별 검토사항 〔계속: ○ 〕 〔신규: 〕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					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·해당없음					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·해당없음					

구유 일반재산(세곡동 171-27) 매각 결과

구유 일반재산 매각계획(재무과-24143,2015.9.14)에 따라 활용성 없는 구유 일반재산 (세곡동 171-27)에 대하여 매수신청자에 매각 결정하고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임.

I 관련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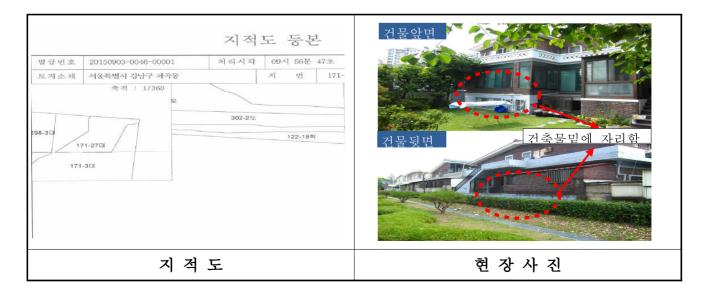
- □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9조, 30조, 36조 동법 시행령 제27조,38조
- □「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38조
- □ 구유 일반재산(세곡동 171-27) 매각 계획 [재무과-24143,2015.9.14.]

Ⅱ 매각대상 현황

□ 현 황

재 산 의 표 시				매각	토지이용계획	현 황	
소재지	구분	소유주	지목	(연)면적	면적	도시의중계획	인 정
세곡동 171-27	토지	강남구	대	42 m²	42 m²	도시지역, 제1종일반주거 지역	주거용건축물 축조되어있음

□ 지적현황 및 현장 사진



Ⅲ 추진 경위

- □ 대상토지 이력
 - 舊 지적도(1970년대 후반 작성 추정): 구거로 등재
 - 해당 구거는 지적도에만 표시 (토지대장 미작성, 면적은 알 수 없음)
 - 1998.09.24. : 지적도 재작성 시 **해당 구거 누락** (대지에 포함 등재)
 - 2014.12 : (재건축 관련) 해당 구거 확인 신청 (이정호 ⇒ 부동산정보과)
 - 2015.06.03.~04 : 지적공부 및 등기부 기재 (구거로 등재)
 - ☞ 지적공부(토지대장, 지적도 등): 2015.06.03. 변경 / 등기부: 2015.06.04. 등재
 - 지적공부 재작성 시 구거 면적 확정 (42.0 m²)
- □ 2015. 6. 29. : 구거 용도폐지 및 매각 민원 제기 (이정호 → 건설관리과)
- 민원인: 이************
- 민원내용 : 강남구 소유의 구거(세곡동 171-27, 42 ㎡)가 신청인의 대지(세곡동 171-3)
- 에 포함되어 있어 재건축이 불가하므로 해당 구거의 용도폐지 및 매각 할것을 신청
- □ 2015. 8. 26. : 용도폐지(구거→대) 및 재산관리관 변경(건설관리과 → 재무과)
 - ※ 세곡동 171-27 구거 부지 용도폐지 및 변상금 부과계획(건설관리과-20078/2015,08.11.)
 - : 구유재산 매수신청서, 대부신청서 제출 (이정호→재무과)
 - : 2015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해당 부지 매각 관련 사전 설명
- □ 2015. 9. 1. : 세곡동 171-27 대부계약 체결 (재무과 ↔ 이정호)
 - 임치자 : 이************
 - 대부목적 : 주거용건축물 점용
 - 대부기간: 2015.8.26(재산관리관 변경일) ~ 2015.9.14
 - 대 부 료 : 166,840원 ※ '무유 일반째신'(세곡동 171-27) 대부승인, (재무과-22845)
- □ 2015. 9. 9. : 2015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추가심의 (원안가결)
 - 매각 가격 사정 및 매각 추진 결정
- □ 2015. 9. 14. : 매각 계획 수립 (재무과-24143,2015.9.14.)
- □ 2015. 9. 15. : 매각 계획 체결 (재무과 ↔ 이정호)
 - 매수자: 이**********
 - 매각대금: 169,426,400원

- □ 2015. 10. 19. : 매각 대금 및 잔여 대부금 납부
 - 매각 대금 : 169,649,200원 (매각대금-169,426,400원 / 연체료-222,800원)
 - 잔여 대부금 : 283,640원 (2015.9.15~2015.10.18 매각대금 납부 전일까지 대부금)
 - 매도증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교부

Ⅳ 매각 결과

① 매각 계약 체결 (2015. 9. 15)

- 매 수 자 : 이************
- 매각방법 : 수의계약 ☞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1항
 - ※ 수의계약 시유 : 매수신청자가 본인 토지 및 해당 토자위에 주거용 건축물을 축조하여 소유중으로,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
- 매각가격 : 169,426,400원 ☞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가격 산정 (감정평가 수수료 포함)
- 매매대금 납부 기한 : 2015. 10. 14
 - ※ 2015. 9. 15. 이후 매기대금 납부하는 경우, 대금 납부일 전일까지(단,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限 해당 부자에 대한 대부계약이 연장되며. 대부료 미납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는다는 특약 명기

② 매각 대금 납부 (2015. 10. 19)

- 매각 대금 및 연체료 납부 : 169,649,200원
 - 매각 대금 : 169,426,400원 / 연체료1) : 222,800원
- 잔여 대부금 납부 : 283,640원
 - 매매계약서 약관 제2조에 따라 매각대금 납부 전일까지 대부계약이 연장(2015.9.15~10.18)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대부금 납부
- 매도증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교부 (재무과 → 이정호)

Ⅴ 추진효과

□ 매수청구자로부터 장기간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활용도 없는 일반 재산의 매각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

¹⁾ 연체료 산정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80조(연체료의 징수)에 따라 연체료 산정(연체기간 :2015.10.14~10.18-4일/연체율:연12%,일할계산)

Ⅵ 행정사항

□ 재산매각에 따른 새올행정 공유재산시스템 재산내역 정비

붙임: 1.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(별첨)

- 2. 구유재산 매각대금 납부영수증
- 3. 잔여대부금 납부 영수증
- 4. 매도 증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